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10 선고 2021가단1310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최승만

변 론 종 결 2023. 1. 20.

판 결 선 고 2023. 3. 1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8. 6. 11. 공증인 D 작성 공정증서 2018년 제236호로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33,645,6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645,62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는 2017. 11. 7.경 C에게 2,000만 원을 이자는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20. 5. 15.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이 법원 2020차전17489)을 발령받았는데 위 지급명령은 2020. 8. 27. 그대로 확정되어 C은 피고에게 35,545,661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21.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F 배당절차를 통해 8,120,576원을 수령하였는데 배당기일인 2022. 10. 24. 기준으로 변제충당하면 원고의 남은 채권액은 33,645,625원이 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한편, 피고는 2018. 6. 11. C과 사이에 피고가 2017. 5. 10. C에게 8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8. 6. 1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변제기 다음날인 2018. 6. 19. 울산지방법원에 울산광역시 중구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울산광역시 중구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21. 신청한 대로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며, 2021. 7. 30.까지 합계 78,489,005원을 울산광역시 중구로부터 수령하였다.

다. C은 위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급여채권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원피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G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 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은 그 실질에 있어 C이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위 피압류채권을 양도해준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과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에게 해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바, 2022. 10. 24. 기준 원고의 남은 채권액은 33,645,625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33,645,6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3,645,62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